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 (안) 심 사 보 고 서

1993. 11. 1.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3. 10. 9
- 다. 회부일자 : 93. 10. 11
- 라. 상정일자 : 93. 10. 29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배경

-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던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고
- 종전의 대구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및 대구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에서 규정한 시장권한이 대폭 구청장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구조례를 제정하여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구청장이 직접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나 공동주택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케하고 조치명령을 준수하도록 함.

나. 주요골자

- 일반폐기물 다량배출업자는 자가 처리할 경우 1월이내에 자체수집 운반처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처리 요구자는 일반폐기물 수집업자로 하여금 위탁하고 폐기물 운반업자는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 위탁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였음.
- 구청장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및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동 감면자에 대한 수수료는 차액을 수집운반업자에 지급하도록 하였음.
-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 징수는 동장에게 내부위임하고
- 종전의 대구직할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의 제5종의 별도의 요금을 규정, 삭제
- 폐기물을 도로하천 공원등 투기금지 지역에 투기하거나 종류별 성상별 분리보관 미이행자에게 과태료 부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조례는 제정근거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63조 및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규정하고 있음.

본 조례(안) 6장 16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음.

제4장 일반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일반 주택등의 수거 수수료와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공동주택등에 대한 수수료와의 형평성 유지 문제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함.

4. 질의·답변 요지

- 폐기물 관리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는 설치하게 할 수 있다"를 "공동주택에 대하여 대행업체가 보관시설의 용기를 설치한다"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가?

-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법 해석상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으나 이제까지 분리수거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용기설치는 행정지도 및 권장으로 대행업체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었으며 함.
- 공동주택은 폐기물 분리수거후 경영수지가 20~30% 호전되었다는데 아직도 종전 요금표 그대로 조례안으로 적용한 이유와 과장은 대행업체의 경영 분석을 해본일 있는가?
- 조례안의 별표 1 요금은 91.4.15 시조례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그동안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흘러 물가가 상승하였고 인건비가 118%, 매립용 쓰레기 보관 용기 설치 1169개소(개당 165,000원) 1억9천여만원이 추가 부담되었고 또한 자동상차기 부착 및 교통량이 폭증하여 수송시간이 길어지는 등 여건이 별로 호전된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경영분석 해본적은 없습니다.

5. 토론 요지

- 조례안 제4조 제4항 중간부분 "대구직할시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징수조례"를 "대구직할시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로 잘못 표기된 것임.
- 공동주택에 대하여 폐기물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폐기물의 양이 분리수거전에 비해 수거방법이 용이해졌고 수거량이 엄청나게 줄었으므로 그에 대한 인력 및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이 30~40%정도 감소
- 달서구는 타구(수성구, 동구 등)에 비해 쓰레기 처리장 및 소각시설이 관내에 있어 수송 비용이 타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며
- 92년 주택분포는 일반주택 28,352(45.5%)보다 공동주택 33,957(54.5%)세대로서 공동주택이 많으며 청소사업에 집행된 92예산은 약 27억여원임.
일반주택 수거수수료 수입은 9억여원에 지나지 않아 구비 18억원 정도를 지원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양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지난 청소대행업체 모집시 1업체 선정에 776여업체가 신청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됨.

6. 수정안 요지

제안자	수정주요골자		수정이유
	원안	수정안	
손영일 의원 외 5인	제4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위탁지정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u>대구직할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등 징수조례</u> ……	제4조 ④ …… … … 대구직할시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조례안이 잘못되었음
손영일 의원 외 5인	제6조 ① …… …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① …… …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단 공동주택에 대하여 기 설치된 일반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파손 또는 훼손 되었을 시는 대행업자가 설치한다)	공동주택의 폐기물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훼손되었을 경우 수거업체가 신속히 조치하기 위함.
이기도 의원 외 5인	제9조 ②수수료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의 종별구분 및 수수료액표 (별표1)중 제2종 2등급 부과기준 평형별 수거 수수료액을 일률적으로 10% 인하 조정함 : 별지	폐기물 분리수거로 인한 폐기물의 양이 줄었으며 그에 따른 인력 및 수거비용이 감소

7. 심사결과 : 수정안

- 소수의 의견 : 본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말고 보류한 후 충분한 검토와 경영수의 분석등 각종의 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안건을 처리하자는 의견

구 분	부과대상	부 과 기 준	수거요금	비 고
제 2 종 급	공동주택 (아파트등)	건물 분양면적 165㎡ 이상	3,600	165㎡ 초과 33㎡ 마다 110원 가산 (쓰레기 저장소의 위치 구조등 작업여건의 차이 에 따라 10% 범위내에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가 산 적용할 수 있다. 단, 접하구 작업을 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50평) 165㎡ 미만	3,480	
		" (40평) 132㎡ "	3,360	
		" (30평) 99㎡ "	3,240	
		" (25평) 83㎡ "	3,130	
		" (20평) 66㎡ "	3,010	
		" (15평) 49.5㎡ "	2,430	
		" (10평) 33㎡ "	1,850	

(주) : ① 재산세액은 건물분 재산세액 다만 폐기물 수거료 부과당시 재산세액이 없을 시는 전기분 부과당시 과표에 의거 재산세액을 산출한 후 그 액에 의거 부과한다.

② 제1종, 제2종 → 월료액